제315회 임시회

2012.10.18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10. 18. 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9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0월 10일

(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황규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명칭의 변경 : ‘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’ ⇒ ‘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’

○ 자매결연 체결시 「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」을 따르도록 명시 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전문위원 : 송장섭)

○ ‘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충북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중 “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제6조제3항 제2호 중 “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절차에 의하여 방문한다.”를 “「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」을 따른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	**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**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**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**
제2조 ~ 제3조 (생 략)	제2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
제4조(자매결연의 제의) ① ~ ② (생 략)	제4조(자매결연의 제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	③ **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**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 (생 략)	제5조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 ~ ② (생 략)	제6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자매결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생 략)
2. 외국자치단체에서 서명할 경우 : 방문일정은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를 사전에 정하여 방문계획을 통보하고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 절차에 의하여 방문한다.	2. ----------「충청북도 공무 국외 여행 규정」을 따른다.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